

■ [재대행]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측정대행업자 외에 측정대행업체 선정가능여부

【요지】

- ☞ 환경질 측정을 위한 재대행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측정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측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정도관리 적합판정 등)이 있는 측정대행업자는 모두 가능함
- # 환경질 측정, 재대행, 측정대행계약, 측정대행업, 측정업무

【법】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43조, 시행규칙 제9조

<p>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타법개정]</p>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p>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83호, 2022. 4. 25., 일부개정]</p>
<p>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 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p> <p>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제목개정 2018. 11. 29.]</p>

<질의>

민원 신청 내용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의 "측정대행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의 "측정대행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5.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민신문고(접수번호 1AA-2201-0499667, 2022-1-17) "환경질 측정을 위한 재대행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측정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측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정도검사 적합 판정 등)이 있는 측정 대행업자는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측정대행업체와 환경질 측정관련 재대행 계약을 하였을 경우 제69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사항 변경) 따라서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제68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의 측정대행계약은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측정대행업체와의 별도 계약 양식이 있는지(두 업체간의 상호 협약서인지)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에 해당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

답변 내용

통지일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2-11-08 13:47:48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210-0651758)를 통해 질의하신 “측정대행업체 재대행 시 등록사항 변경 필요여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의 조사·측정 업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환경질 측정을 위한 재대행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측정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측정대행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측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정도관리 적합판정 등)이 있는 측정대행업자는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별표 5에 따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사항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평가업 등록사항’의 ‘측정대행업자 및 그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환경질 측정 재대행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평가업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측정대행업체와의 별도 계약 양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환경영향평가업 관련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심소연 주무관(044-201-72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